



정책동향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코자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536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 전화면접한 것으로 최대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이다. 조사문항은 총 13개로서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 3개, 복지분야가 4개, 보건의료분야가 4개, 음식물 소비 및 가정의례에 관한 것이 2개로 되어 있다. 주요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정책 전반 관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89.7%(낮은 편: 69.1%+아주 낮음: 20.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높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함.
- 따라서 일반국민은 IMF 경제난 속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규모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므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62.6%)이 과반수 이상으로 투자확대 의견이 높게 나타남. 반면,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3.8%이고, 다음으로

‘경제가 어려워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는 투자축소 의견은 13.8%로 가장 낮았음.

-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므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30대(66.9%), 화이트칼라(69.9%)와 고학력,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은 반면, ‘경제가 어려워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는 농·임·어업(18.9%), 가정주부(16.7%), 고연령, 저학력,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임. 한편,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20대(27.8%)와 학생(32.6%)에서 더 높았음.
- 또한 일반국민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믿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표된 정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았음. 다음이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정책입안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27.1%)와 ‘각 정책간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의 응답수준이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과대평가하여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9.3%에 그침.
- ‘발표된 정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50세 이상(43.3%), 농·임·어업(46.0%), 화이트칼라(45.9%)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정책입안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30대(32.1%)와 고학력층일수록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관련

-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24.8%), ‘노인’(20.4%), ‘보호가 필요한 아동’(17.0%), ‘보호가 필요한 여성’(2.7%)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가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 중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일거리가 없음’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로움’(28.2%), ‘경제적 빈곤’(22.6%), ‘건강’(12.0%), ‘주택문제’(2.5%)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22.5%), ‘편의시설 부족’(19.1%), ‘경제적 어려움’(16.7%), ‘교육시설 부족’(5.0%)의 순임.
- 만약 사는 동네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가 있을 때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의견이 82.4%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7.2%에 그침.

□ 보건의료제도 관련

- 의료비 지출이 가계살림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1.3%(매우: 17.5%+어느 정도: 43.8%)로, ‘부담이 안된다’는 응답 38.4%(별로: 34.3%+전혀: 4.1%)보다 훨씬 더 높았음.
  - 의료비 지출이 가계살림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여자(64.0%), 50세 이상(71.1%), 농·임·어업(76.8%), 가정주부(67.1%), 읍·면지역 거주자(66.3%)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반면, ‘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남자(41.0%), 20대(43.7%), 화이트칼라(47.6%), 학생(51.7%)과 고학력일수록 높음.
- 의료제도 중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많다’가 4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23.4%), ‘보험료가 비싸다’(12.7%), ‘병원을 원하는 대로 가기 어렵다’(10.7%), ‘절차가 복잡하다’(8.7%)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진료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건소의 진료활동에 대해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있으므로 진료활동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83.1%로 응답의 대다수를 차지함. 반면, ‘진료활동을 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13.9%)와 ‘민간병원이 있으므로 진료활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2.3%)는 응답은 매우 낮았음.
- 의료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를 보면, 정부가 의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52.7%로 과반수인 반면,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38.3%이고, 그 다음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고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8.7%에 불과함. 따라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91.0%)이 정부의 의료문제에 대한 개입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30대 이상의 고연령층, 농·임·어업(66.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20대(51.5%), 학생(59.4%), 대재 이상(45.3%), 고

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 음식물 소비 및 가정의례제도 관련

- 식당에서 손님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식단제 등과 같이 반찬 가지수에 따라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넉넉한 상차림을 원하는 손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24.2%)과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식단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응답(22.9%)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서 간소한 식단을 내놓도록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10.3%에 그침.

- ‘주문식단제 등과 같이 반찬 가지수에 따라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44.2%), 화이트칼라(49.4%), 40대(47.9%)와 고학력,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아짐. 또한 ‘넉넉한 상차림을 원하는 손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학생(28.0%)과 저연령층일수록 높아진 반면,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식단을 간소화해야 한다’와 ‘정부에서 간소한 식단을 내놓도록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대체적으로 고연령, 저학력,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 혼례, 상례 등의 가정의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가정의례제도에 대해서 ‘문화 및 관습에 관계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음. 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40.2%이고, ‘개인생활 문제이므로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0.4%에 그침. 따라서 응답자의 10명중 9명(89.6%)이 정부의 가정의례제도에 대한 개입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5:4 정도로 ‘꼭 필요시 개입’ 의견이 ‘적극적 개입’의견보다 약간 더 높음.

- ‘문화 및 관습에 관계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화이트칼라(54.7%), 학생(62.6%), 중소도시 거주자(54.8%)와 저연령,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자(43.5%), 농·임·어업(54.2%), 가정주부(49.0%), 읍·면지역 거주자(46.1%)와 고연령, 저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개인생활 문제이므로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남자(14.2%),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생활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자로 생활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관련 기준의 완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관련기준에 부양의무자에게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여(이 경우 사후구상권 행사; 법 제39조)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장애보호의 대상자 확대 및 절차 개선
  - 현재 거택, 시설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가입자는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일하게 자활보호대상자만이 장애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장애보호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
  - 거택보호대상자인 노인·아동·임산부·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보호를 할 수 있게 하였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생활보호법상의 각 보호를 행하는 보호시설의 범위에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포함시킴.
- 생계보호금품의 정기지급일 명시 및 생계보호개시 및 중지일 생계비 계산의 간편화
  - 생계보호금품의 정기지급일을 매월 20일로 명시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계획성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종래 일할(日割)로 계산하던 생계비 계산방식을, 보호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분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며, 생계보호가 중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인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교육보호의 절차를 개선함.
  - 종래 읍·면·동장이 ‘수업료지원대상자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신입생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생활보호시설수용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학비지원대상자가 학비지원신청서에 학비납입고지서 및 전분기 학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지원대상자 가계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하도록 함.
- 생활보호법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필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이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또는 계측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공포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4월 28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작년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법인이 아닌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국가시험제도의 도입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교부하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자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 있는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을 기하는 등 사회복지사자격 기준을 변경함(안 제3조 별표 1).
- 2003년부터 도입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와 관련,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일시 장소 등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며, 시험과목 응시자격을 정하는 등 국가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범위에 기존의 보육시설 외에 노인 여가시설, 점자도서관, 여성복지상담소 등 별도의 전문가가 있는 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의 업무 범위에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공동모금사업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회원자격도 지금의 복지분야 관계자 중심에서 경제계·언론계·종교계·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협의회가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설당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유료양로시설 등 서비스 내용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평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업무를 추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는 자원봉사활동 지

원·육성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와 신고업무를 위탁함(안 제42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매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매 5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교육훈련상황을 추가함(안 제7조).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의무화한 법정규정과 관련, 종사자 총수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9조).
-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과 공고방법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회복지법인이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제3항).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시설설치 주체의 범위에 개인도 포함됨에 따라 시설설치·운영을 위한 신고방법·내용·절차 등 신고제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개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설의 최소설치 규모를 상시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하고, 개별 복지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별표 3).
-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호시설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은 시설입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소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제31조).
-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시 시설의 보조금,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에 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청산절차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는 등 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설평가시에는 입소인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받는 후원금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6조).

### 제3회 여성주간 행사계획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다.

- 1998년 제3회 여성주간은 ‘남녀가 더불어 일하는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국가(여성특별위원회, 정부 해당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기로 함.
  - 동법이 시행된 1996년 제1회 여성주간의 주제를 ‘생명존중’으로 하여 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2회는 ‘경제살리기’를 주제로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동참을 유도하였음.
- 중앙단위 행사로는 7월 3일 14: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7월 4일 21C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방송 토론회』, 7월 7일 시·도 및 지방농어민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여성화합 한마당』 등이 있으며, 여성주간 동안 문화관광부 후원을 얻어 서울의 5개 고궁(경복궁, 덕

수궁, 창경궁, 비원, 종묘)을 개방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여성의 참여기회 제고로 문화인식에 대한 범 국민적 저변확대를 도모함.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2일 14:00 『보건복지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및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키로 함.
  - 관련기관(단체)에서 여성의 발전방향-직업과 자기개발, 여성과 직업의식, 발전하는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 또는 토의과정에 참여하여 직장내 여성발전으로 복지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